

의안 번호	952
----------	-----

울산광역시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연월일 : 2012. 11. 12.(월)
-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다. 위원회회부 : 2012. 11. 13.(화)
- 라. 위원회심사 : 2012. 11. 30.(금)

## 2. 제정이유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에 위임된 사항으로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발생 지역의 시설물 위험도를 신속하게 평가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 목적·용어의 정의·적용범위(안 제1조, 제2조, 제3조)
- 나.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안 제4조)
- 다.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안 제5조)
- 라. 위험도 평가 시기 및 현장조치 등(안 제6조, 제7조)
- 마.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안 제8조)
- 바. 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안 제9조)
- 사. 위험도 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 보상(안 제10조)
- 아. 경비지원(안 제11조)
- 자. 운영세칙(안 제12조)

## 4. 근거법령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 5. 검토의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은 지진발생 유사시를 대비한 건축, 토목 등 전문 인력 50명 내외로 구성하고 연 한차례 이상의 교육이나 세미나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지지피해가 미미한 우리나라의 특성을 감안할 때 소속원들의 활동과 관심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며, 평상시 지진피해 대책에 대한 연구발표, 피해지역 견학 등의 스스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직구성, 예산지원 등이 필요할 것이며, 교육에 필요한 경비, 회의 참여수당 등의 예산확보가 수반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됨.